

법 제9조제1항제3호	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-------------------	--

실(국)	담당 부서(과)	소관업무	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
처리과	공통	공통 업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) 전략 및 계획 3) 각종 전문 발송 나.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협상전략 및 계획 2) 각종 전문 발송 2. 수사관계 조회사항 3. 위법·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의 신상사항 4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방재, 방법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. 사람의 생명, 생활,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.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. 위험물의 저장위치 7.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·구조·경비에 관한 정보